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39

제출연월일 : 2020. 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 이유

신규 공공체육시설 등재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의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용사용료·이용료를 조정하여 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 사용 허가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사용허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 (안 제3조제2항·제4항)

나. 한국소비자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환불 요청에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4조제1항)

다. 신규체육시설의 명칭 등재 및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관·대구FC 연습구장(축구장), 강변리틀야구장 전용사용료 신규 책정, 전용사용료 단서조항 조정(안 별표1 및 별표 2)

라. 대구국제사격장 이용료 신규책정, 이용료의 단체이용자 기준 조정(안 별표 3)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제3조제2항에서 “그 허가 내용을 통합예약 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신청인의 의견 반영과정이 없어 자의적 권한 행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개되는 허가내용의 적정여부, 신청인 의견 반영 절차 등에 대해 검토 요청.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1998(2019.10.23.)」 호와 관련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공체육시설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통합예약시스템’의 허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예약현황(예약단체명 등)비공개 ○ 향후 개인·단체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허가내용 공개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허가내용 공개 예정.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허가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시민운동장의 명칭란 중 시민체육관란 다음에 다목적체육관란, 체육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목적체육관
체육복지센터

별표 1의 대구체육공원의 명칭란 중 론볼장란 다음에 축구장란을, 체육회관란 다음에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란을 신설하여, 암벽등반장, 론볼장, 축구장, 씨름장, 대구FC클럽하우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체육회관,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명칭 및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암벽등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론 볼 장	
축 구 장	
씨 름 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3
대구FC 클럽하우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9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5
체육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39

별표 1의 비산지구 체육시설란 다음에 동촌지구 파크골프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21-1번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별표 2의 시민운동장의 시민체육관란 다음에 다목적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목적체육관 (대)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다목적체육관 (소)	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별표 2의 대구체육공원 씨름장란 다음에 축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구장 (천연잔디)	주간	전체	250,000	370,000	750,000	1,00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별표 2의 강변축구장(면당)란 다음에 강변리틀야구장(1·2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변리틀야구장 (1·2구장)	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4시간	25,000	30,000	50,000	60,000

별표 2 중 범어궁도장의 사용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3시간

별표 2 중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의 사용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간
야 간

별표 2 중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간
야 간

별표 2 중 두류테니스장(면당)의 사용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전체
	2시간
야간	전체
	2시간

별표 2 중 대덕승마장의 사용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간

별표 2 중 비고란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함”을 각각 “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테니스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 및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축구장”을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대구국제사격장의 실내사격장란 중 공기총(10M)란 및 화약총(25M, 50M)란의 전자표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구국제사격장의 클레이사격장란의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란 다음에 더블트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블 트랩	1라운드 접시 30장	10,000	9,000	

별표 3 중 대구국제사격장의 비비탄사격장란 다음에 VR체험사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R체험사격	1회	어 른	3,000	2,500	
		청소년·어린이	2,500	2,000	

별표 3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야구장, 수영장은 30명”을 “승마장은 5명”으로 한다.

별표 7의 실탄보관란 다음에 전자표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표적	공기총	소총	1시간 800/ 2시간 1,500	10m, 1회
		권총	1시간 900/ 2시간 1,800	
	화약총	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	1시간 4,000/ 4시간13,000	25m, 1회
		속사	1시간 6,000/ 4시간 20,000	25m, 1회
		소총·권총	1시간 4,500/ 4시간 16,000	50m, 1회

별표 7 중 숙소의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00
35,000
55,000
120,000

별표 7의 육상진흥센터란 다음에 대구국제사격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구국제사격장	회의실	주간	50,000	70,000	〃
		야간	70,000	100,00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며, 그 허가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이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이용료 전액을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천재지변(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을 포함한다), ----------

현 행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리기관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시민체육관		
		<신설>		
		<신설>		
		정구장		
		유소년축구장		
		스쿼시장		
대구실내빙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대구체육공원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보조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로 2-46	
	론볼장			
	<신설>			
	씨름장			
	대구FC 클럽하우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체육회관			
	<신설>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삼덕동)	
		육상아카데미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100(삼덕동)	
⋮			⋮	
비산지구 체육시설		비산강변축구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번지	
		비산소프트볼훈련장		
		비산파크골프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920번지	
<신설>				
산격강변축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7-1	
봉무리틀야구장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87	
세천리틀야구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542	
⋮			⋮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	⋮		⋮	환경자원사업소

개 정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리기관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체육복지센터		
		정구장		
		유소년축구장		
		스쿼시장		
대구실내빙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대구체육공원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보조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론볼장			
	축구장			
	씨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3	
	대구FC 클럽하우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9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5	
	체육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39	
	⋮		⋮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100(삼덕동)	
⋮			⋮	
비산지구 체육시설		비산강변축구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번지	
		비산소프트볼훈련장		
		비산파크골프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920번지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21-1번지	
산격강변축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7-1	
⋮			⋮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	⋮		⋮	환경자원사업소

현 행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민 운동장	⋮			⋮			
	시민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신설>			⋮			
⋮	⋮			⋮			
대구 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씨름장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신설>						
⋮	⋮			⋮			
강변축구장 (면당)	천연잔디	주간	전체	250,000	370,000	750,000	1,00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신설>							
⋮	⋮						
범어궁도장	주간 3시간			30,000	40,000	50,000	70,000
⋮	⋮			⋮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	⋮			⋮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주 간			90,000	130,000	150,000	220,000
	야 간			130,000	200,000	220,000	3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	주 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 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대덕승마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			⋮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민 운동장	⋮			⋮			
	시민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다목적 체육관(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다목적 체육관(소)	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	⋮			⋮			
대구 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씨름장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축구장 (천연잔디)	주간	전체	250,000	370,000	750,000	1,00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			⋮			
강변축구장 (면당)	⋮			⋮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강변리틀 야구장 (1·2구장)	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4시간		25,000	30,000	50,000	60,000
⋮	⋮						
범어궁도장	주간 3시간			30,000	40,000	50,000	70,000
⋮	⋮			⋮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	⋮			⋮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주 간			90,000	130,000	150,000	220,000
	야 간			130,000	200,000	220,000	330,000
두류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대덕승마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			⋮			

현 행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	⋮	⋮			
성서산업단지체육공 원	⋮	⋮			
비고	1. 생략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함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함 6. 대구사격장은 전자표적을 사용할 경우 별표 3의 전자표적 이용료를 별도 징수함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 및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축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	⋮	⋮			
성서산업단지체육공 원	⋮	⋮			
비고	1. 생략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 제>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주 · 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시민운동장	⋮					⋮	⋮		
⋮	⋮					⋮	⋮		
⋮	⋮					⋮	⋮		
대구국제 사격장	실내 사격장	공기총	10M	사 대		1회 1시간당	800	500	
						1회 2시간당	1,500	1,000	
				전자표적	소총	1회 1시간당	800		
						1회 2시간당	1,500		
					권총	1회 1시간당	900		
						1회 2시간당	1,800		
		화약총	25M	사 대	권총 등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속사	1회 1시간당	4,500	3,000	
						1회 4시간당	14,000	10,000	
				전자표적	권총 등	1회 1시간당	4,000		
						1회 4시간당	13,000		
					속사	1회 1시간당	6,000		
						1회 4시간당	20,000		
			50M	사 대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전자표적	소총 권총	1회 1시간당	4,500		
						1회 4시간당	16,000		
	런닝타겟					⋮	⋮		
	클레이 사격장	트랩,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접시25장	8,000	7,000	
		<신설>							
	⋮					⋮	⋮		
	비비탄사격장					⋮	⋮		
	<신설>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					⋮	⋮		
비 고	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야구장, 수영장은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 5. (생략)								

개 정 안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주 · 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시민운동장	⋮						⋮		⋮		
⋮	⋮						⋮		⋮		
⋮	⋮						⋮		⋮		
대구국제 사격장	실내 사격장	공기총	10M	사 대			1회 1시간당		800	500	
							1회 2시간당		1,500	1,000	
		화약총	25M	사 대	권총 등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속사		1회 1시간당		4,500	3,000	
							1회 4시간당		14,000	10,000	
			50M	사 대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런닝타겟						⋮		⋮		
	클레이 사격장	트랩,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접시25장		8,000	7,000	
		더블트랩					1라운드 접시30장		10,000	9,000	
	⋮						⋮		⋮		
	비비탄사격장						⋮		⋮		
	VR체험사격						1회	어른	3,000	2,500	
								청소년·어린이	2,500	2,000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						⋮		⋮		
비 고	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7]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시설			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		·기본사용료 -축구·야구장 : 50,000 -기타경기장 : 30,000
방송시설	⋮		⋮		⋮
전기	⋮		⋮		⋮
⋮	⋮		⋮		⋮
냉·난방	⋮		⋮		⋮
실탄보관	⋮		⋮		⋮
<신설>					
숙 소	1인실(1박)		20,000		대구FC 클럽하우스
	2인실(1박)		25,000		대구국제사격장, 육상진흥센터, 대구FC 클럽하우스
	4인실(1박)		40,000		대구국제사격장, 대구FC 클럽하우스
	단체(10인 기준)		100,000		대구국제사격장
대덕승마장	⋮		⋮		⋮
육상진흥센터	멀티 미디어실	주간	50,000	70,000	1회 4시간 기준
		야간	70,000	100,000	〃
<신설>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	⋮	⋮		
기타시설물	(생 략)				
비 고	(생 략)				

개 정 안

[별표7]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시설				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		·기본사용료 -축구·야구장 : 50,000 -기타경기장 : 30,000
방송시설	⋮			⋮		⋮
전기	⋮			⋮		⋮
⋮	⋮			⋮		⋮
냉·난방	⋮			⋮		⋮
실탄보관	⋮			⋮		⋮
전자표적	공기총	소총		1시간 800 / 2시간 1,500		10m, 1회
		권총		1시간 900 / 2시간 1,800		
	화약총	권총,스탠다드 센터파이어		1시간 4,000 / 4시간 13,000		25m, 1회
		속사		1시간 6,000/ 4시간 20,000		25m, 1회
		소총·권총		1시간 4,500 / 4시간 16,000		50m, 1회
숙 소	1인실(1박)			25,000		대구FC 클럽하우스
	2인실(1박)			35,000		대구국제사격장, 육상진흥센터, 대구FC 클럽하우스
	4인실(1박)			55,000		대구국제사격장, 대구FC 클럽하우스
	단체(10인 기준)			120,000		대구국제사격장
대덕승마장						
육상진흥센터	멀티 미디어실	주간		50,000	70,000	1회 4시간 기준
		야간		70,000	100,000	〃
대구국제사격장	회의실	주간		50,000	70,000	〃
		야간		70,000	100,000	〃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	⋮		⋮		
기타시설물	(현행과 같음)					
비 고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이용료 및 감면대상 등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태연